

|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|  |  |
|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|--|
| 사 업 |  |  | 법인세 과세표준 및<br>세액조정계산서 |  | 법 인 명   |  |  |
| 연 도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사업자등록번호 |  |  |

  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--|--|--|
| ①<br>각<br>사업연도<br>소득<br>계산 | ⑩①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               | 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득조정<br>금 액                     | ⑩② 익 금 산 입                         | 02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③ 손 금 산 입                         | 03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④ 차 가 감 소 득 금 액<br>(⑩① + ⑩② - ⑩③) | 04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⑤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             | 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⑥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이 월 액<br>손금산입  | 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⑦ 각 사업연도소득금액<br>(⑩④ + ⑩⑤ - ⑩⑥) | 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
  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--|--|--|
| ②<br>과<br>세<br>표<br>준<br>계<br>산 | ⑩⑧ 각 사업연도소득금액<br>(⑩⑧ = ⑩⑦)        |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⑨ 이 월 결 손 금                      | 07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⑩ 비 과 세 소 득                      | 08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⑪ 소 득 공 제                        | 09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⑫ 과 세 표 준<br>(⑩⑧ - ⑩⑨ - ⑩⑩ - ⑩⑪) | 10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⑬ 선 박 표 준 이 익                    | 55 |  |  |  |  |

  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--|--|--|
| ③<br>산<br>출<br>세<br>액<br>계<br>산 | ⑩⑬ 과 세 표 준 (⑩⑫ + ⑩⑬)            | 56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⑭ 세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⑮ 산 출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| 12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⑯ 지 점 유 보 소 득<br>(「법인세법」 제96조) | 13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⑰ 세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⑱ 산 출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| 15 |  |  |  |  |
| ⑩⑲ 합 계 (⑩⑮ + ⑩⑱)                |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
  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--|--|--|
| ④<br>납<br>부<br>할<br>세<br>액<br>계<br>산 | ⑩⑲ 산 출 세 액 (⑩⑲ = ⑩⑱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<br>공 제 감 면 세 액 |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차 감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|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최 저 한 세 적 용 제 외<br>공 제 감 면 세 액 |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가 산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가 감 계 (⑩⑲ - ⑩⑲ + ⑩⑲)           |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<br>납<br>부<br>세<br>액             | ⑩⑲ 중 간 예 납 세 액                | 22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수 시 부 과 세 액                | 23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원 천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| 24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간접투자회사등의<br>외국납부세액         | 25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소 계<br>(⑩⑲ + ⑩⑲ + ⑩⑲ + ⑩⑲) | 26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신고납부전가산세액                      | 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합 계 (⑩⑲ + ⑩⑲)                  |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
  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|--|--|
| ⑤<br>토<br>지<br>등<br>양<br>도<br>소<br>득<br>에<br>대<br>한<br>법<br>인<br>세<br>계<br>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양도 차익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등 기 자 산 | 31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미 등 기 자 산                 | 32         |    |  |  |  |
| ⑤<br>비<br>과<br>세<br>소<br>득<br>과<br>세<br>표<br>준<br>세<br>율<br>산<br>출<br>세<br>액<br>감<br>면<br>세<br>액<br>차<br>감<br>세<br>액<br>공<br>제<br>세<br>액<br>동<br>업<br>기<br>업<br>법<br>인<br>세<br>배<br>분<br>액<br>가<br>산<br>세<br>액<br>가<br>감<br>계 | ⑩⑲ 비 과 세 소 득                 | 33         |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과 세 표 준<br>(⑩⑲ + ⑩⑲ - ⑩⑲) | 34         |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세 율                       | 35         |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산 출 세 액                   | 36         |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감 면 세 액                   | 37         |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차 감 세 액 (⑩⑲ - ⑩⑲)         | 38         |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공 제 세 액                   | 39         |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<br>(가산세 제외)  | 58         |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가 산 세 액<br>(동업기업 배분액 포함)  | 40         |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가 감 계 (⑩⑲ - ⑩⑲ + ⑩⑲ + ⑩⑲) | 41         |    |  |  |  |
| ⑤<br>기<br>납<br>부<br>세<br>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수 시 부 과 세 액               | 42         |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( ) 세 액                   | 43         |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계 (⑩⑲ + ⑩⑲)               | 44         |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차감납부할세액 (⑩⑲ - ⑩⑲)         | 45         |    |  |  |  |

  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--|--|--|
| ⑥<br>미<br>환<br>류<br>소<br>득<br>법<br>인<br>세 | ⑩⑲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         | 59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세 율                  | 60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산 출 세 액              | 61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가 산 세 액              | 62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이 자 상 당 액            | 63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⑲ 납부할세액 (⑩⑲ + ⑩⑲ + ⑩⑲) | 64 |  |  |  |  |

  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--|--|--|
| ⑦<br>세<br>액<br>계 | ⑩⑲ 차감납부할 세액 계<br>(⑩⑲ + ⑩⑲ + ⑩⑲)                | 46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| ⑩⑲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<br>경정 세액 공제                     | 57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| ⑩⑲ 분납세액 계산범위액<br>(⑩⑲ - ⑩⑲ - ⑩⑲ - ⑩⑲ - ⑩⑲ + ⑩⑲) | 47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| ⑩⑲ 분 납 할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8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| ⑩⑲ 차 감 납 부 세 액<br>(⑩⑲ - ⑩⑲ - ⑩⑲)               | 49 |  |  |  |  |

## 작성 방법

- 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⑩란부터 ⑫란까지, ⑫란, ⑬란 및 ⑭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, ⑮ 선택표준이익란에 선택표준이익 산출명세서(별지 제3호서식 부표)의 ⑦ 선택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, ⑫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"0" 보다 작은 경우 ⑬ 과세표준란에는 ⑮ 선택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※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⑬~⑭란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(별지 제3호서식 부표2)의 ⑩양도차익, ⑫금액, ⑬과세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.
- ※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(별지 제1호서식)의 ④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'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'으로 '2'로 표기할 경우 ⑩란부터 ⑫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,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③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. 이 경우 작성방법 1부터 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,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③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.
- \* 예: 기능통화(USD), 적용환율(1,100원), 당기순이익(USD 2,000)일 경우 ⑩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'2,200,000' 으로 적습니다.
- ⑩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: (포괄)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적습니다. 다만,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, 당기순손실은 "△" 등 음(-)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.
  - 소득조정금액란(⑫, ⑬): "소득금액조정합계표(별지 제15호서식)"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⑫ 익금산입란 및 ⑬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.
  - ⑮ 기부금 한도초과액란: 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의 ②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.
  - ⑮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④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  - ⑮ 이월결손금란: "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50호서식(갑)]"의 II.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⑬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.
  - ⑮ 비과세소득란: "비과세소득명세서(별지 제6호서식)"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②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"0"을 적습니다.
  - ⑮ 소득공제란: 소득공제조정명세서(별지 제7호서식)의 ⑮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. 다만,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"0"을 적습니다.
  - 세율란(⑮, ⑯, ⑰):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(⑮란은 「법인세법」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「법인세법」 제96조제3항에 따른 세율) 1개만을 적습니다.
  - ⑮ 지점유보소득란: 「법인세법」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(별지 제49호서식)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  - ⑮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: "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갑)[별지 제8호서식(갑)]"의 ⑮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  - ⑮ 차감세액란: ⑮란의 산출세액에서 ⑮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.
  - ⑮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: "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갑)[별지 제8호서식(갑)]"의 ⑮란을 적습니다.
  - ⑮ 중간예납세액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조의4에 따라 환급받아간 세액을 정산할 때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정산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의6서식)의 ⑮중간예납세액 재정산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  - ⑮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: "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을)[별지 제8호서식(을)]"의 ⑮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⑮ 이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.
  - 가산세액란(⑮ • ⑮): "가산세액계산서(별지 제9호서식)"에 따라 적습니다(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).
  - 기납부세액 계란(⑮ • ⑮)
    - 가.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(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),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,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"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(별지 제11호서식)"의 ⑧ 공제(환급)신청금액을 적습니다.
    - 나.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.
  - ⑮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: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('산출세액'에서 '공제감면세액'을 차감한 후의 세액(가산세는 제외함)을 적습니다.
  - ⑮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: "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(별지 제52호의4서식)"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.
  - ⑮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: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4호서식)의 ⑮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적습니다. 다만, 2017.1.1.부터 2017.12.31.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⑮금액에 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2호의2서식)의 ⑮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
  - ⑮ 가산세액란: 가산세액계산서(별지 제9호서식)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⑥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  - ⑮ 이자상당액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0조의3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[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]를 합산하여 적습니다.



## 작성 방법

- ①선박명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 명을 기입합니다.
- ②선박순톤수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순톤수를 기입합니다.
- ⑤운항일수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운항일수를 기입합니다.
- ⑥사용률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3항제4호에 따른 사용률을 기입합니다.
- ⑦개별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②선박순톤수란에 기재된 톤수에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④1톤당1운항일 이익을 곱한 금액에 ⑤운항일수란에 기재된 일수와 ⑥사용률란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.

| 개별선박의 순톤수              | 1톤당1운항일 이익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선박       | 기준선박 외의 선박 |
| 1,000톤 이하분             | 14원        | 18.2원      |
| 1,000톤 초과 10,000톤 이하분  | 11원        | 14.3원      |
| 10,000톤 초과 25,000톤 이하분 | 7원         | 9.1원       |
| 25,000톤 초과분            | 4원         | 5.2원       |

- ⑧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⑦개별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의 합계를 기입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 또는 중질지 80g/m<sup>2</sup>]

#### 작성 방법

1. ㉔구분란에는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"토지",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"건물",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"기타"로 적습니다.
2. ㉕유형란에는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파산,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·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"농지"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 등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은 "기타"로 적습니다.
3. ㉖세율란에는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제1항각호에 따라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.  
예시)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: 40(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제1항제3호)